

말레이시아 물품서비스세(GST)

□ 말레이시아 물품서비스세(Goods & Services Tax, GST)

'15년 4월 1일부터 말레이시아에 물품서비스세가 도입되어 기존 판매세와 서비스세를 대체하였다.

표준 세율은 6%이나 의료 서비스, 항공운임, 쌀, 소금, 커피, 육류, 수산물 등 일부 품목¹⁾은 면세가 되거나 영세율이 적용된다.

○ '15년 4월 이전 적용 조세방법

- **서비스세** : 과세자가 제공하는 과세 서비스의 가치에 대해 부과된다. 과세 서비스의 예로는 호텔 운영, 식당 운영, 주점 및 커피숍 운영, 보험사 운영, 통신사 운영, 자문 및 전문 기업 운영 등을 들 수 있다. 기존 말레이시아의 서비스세율은 6%이다.
- **판매세** : 말레이시아에서 제조되거나 국내 소비를 위해 말레이시아로 수입된 과세 물품에 부과되는 소비세의 일종이다. 수출품은 제외된다. 기존 판매세율은 5 - 10% 사이이다.

□ 물품서비스세(Goods & Service Tax, GST)란 ?

세수 확대 및 세수원 다변화, 지하경제 양성화 차원에서 국제적으로 검증된 세금제도인 물품서비스세를 도입하였다.

물품 서비스세(Goods and Sales Tax, GST)는 국내 소비에 대한 단계별 세금이다. GST는 특별히 면제되는 것을 제외하고 말레이시아 내에서 공급되는 모든 과세 가능 물품과 서비스에 부과된다. 말레이시아로 수입되는 물품과 서비스에도 GST가 부과된다.

1) <첨부> 영세율 리스트 참조

세금은 생산 및 유통 과정의 중간업자들에 의해 단계별로 납부된다. GST는 생산 및 유통 사슬 전체에 걸쳐 납부되지만, 궁극적으로는 최종 소비자에게 전가된다. 따라서 GST 그 자체로는 중간업자들의 비용이 되지 않으며 그들의 재무제표에도 비용으로 표시되지 않는다.

말레이시아에서 물품 서비스세에 따라 등록된 자는 “등록인(registered person)”이라 한다. 등록인은 자신의 고객에게 공급하는 과세 가능 물품과 서비스에 대해 GST를 부과해야 하는 책임을 진다. 또한 자신의 사업을 위해 구입하는 물품과 서비스에서 비롯된 GST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메커니즘을 통해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각 단계에서 더해진 부가가치에만 세금이 부과되도록 한다.

□ GST 과세의무 대상

과세 가능 공급가액 또는 매출액이 연간 50만 RM을 초과하는 모든 소매 업체는 등록인으로 등록해야 할 의무가 있다. 연 매출이 50만 RM 이하인 소매업체의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등록을 선택할 수 있다.

등록 업체에 의해 물품과 서비스가 공급될 때, 등록 업체에 의해 GST가 부과, 징수된다. 부과된 GST는 매출세액이라 한다. 비등록 소매업체는 자신이 공급한 물품과 서비스에 대해 GST를 부과할 수 없다.

□ 일반 소매업체의 GST

○ 표준세율 물품에 부과되는 GST 6%

항 목	비 용
물품 가치	RM 100.00
6% GST	RM 6.00
합 계	RM 106.00

○ 매출세액

- 등록 소매업체는 자신이 공급하는 모든 과세 가능 물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세금계산서는 공급이 이루어진 날로부터 21일 이내에 발행해야 한다. 21일 이내에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는 경우 공급이 이루어진 날을 공급일로 본다.
- 등록 소매업체는 세금계산서 대신 고객에게 간편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고객이 해당 세금계산서에 자신의 이름과 주소를 포함시켜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소매업체는 공급물품에 대해 그러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 영세율 또는 면세 물품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하지 않다. 등록 소매업체가 물품을 혼합하여 공급하는 경우(즉, 표준세율 물품과 면세품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발행되는 세금계산서에는 반드시 표준세율 공급품에 부과되는 GST가 표시되어야 하며 면세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영세율 물품 및 면세품에 대해 GST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하게 기재해야 한다.

○ 매입세액

- 등록 소매업체에서 공급되는 물품의 가격이 6%의 GST를 포함하여 106.00 RM이라 가정할 경우 취득과정에서 발생한 6링깃을 매입세액이라 한다.
- 취득에서 비롯된 매입세액 환급 청구를 위해, 등록 소매업체는 반드시 해당 취득물에 대해 자신의 이름으로 된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서류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 세금계산서가 없는 경우 등록 소매업체는 물품을 수령하였거나 지불을 이미 한 경우라 할지라도 매입세액 환급을 청구할 수 없다.

등록 소매업체가 간편 세금계산서를 갖고 있는 경우, 각각의 간편 세금계산서에 대해 최대 30.00 RM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에 대해서만 매입세액 청구가 가능하다.

- 등록 소매업체는 거래가 이루어진 과세기간에 대한 세금 환급 신청 (GST 03)시 매입세액과 매출세액 모두를 기록하여야 한다.
- 매입세액 청구 시, 등록인은 지불한 매입세액을 부과한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해당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의 합이 매입세액의 합보다 큰 경우 정부에 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매입세액의 합이 매출세액의 합보다 큰 경우에는 정부에서 등록 소매업체에 그 차액을 환급한다.
- 공급업체가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행했거나 공급한 물품을 반품한 경우, 등록 소매업체는 반드시 해당 공급업체에 차변표 또는 신용 전표를 요청하여 관련 과세기간에 대한 자신의 GST 환급(GST 03) 양식에 필요한 조정을 가해야 한다.

□ 표준과세 대상 품목의 단계별 GST 계산 및 예시



- 각 단계별 6% 표준과세 적용 후 환급 처리하여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모든 세금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원리

○ GST 계산 예시

Level of supply	Sales price (including GST at 6%)	Payment to Government
Raw material supplier	Sales price = RM50.00 GST = RM3.00 Total sales price = RM53.00	GST collection = RM3.00 Less: GST paid = RM0.00 GST payable = RM3.00
Manufacturer	Sales price = RM100.00 GST = RM6.00 Total sales price = RM106.00	GST collection = RM6.00 Less: GST paid = RM3.00 GST payable = RM3.00
Wholesaler	Sales price = RM125.00 GST = RM7.50 Total sales price = RM132.50	GST collection = RM7.50 Less: GST paid = RM6.00 GST payable = RM1.50
Retailer	Sales price = RM156.00 GST = RM9.36 Total sales price = RM165.36	GST collection = RM9.36 Less: GST paid = RM7.50 GST payable = RM1.86

- 원재료 공급자 : 50링깃 제품 53링깃(GST 6%포함)에 판매하여 3링깃 매출세액 발생

* 3링깃(매출세액) 세금 납부

- 제조사 : 완제품을 판매가 100링깃에 GST 6% 적용 후 106링깃에 판매

* 3링깃 세금 납부 = [6링깃(매출세액) - 3링깃(매입세액)]

- 도매업자 : 제조사로부터 구매한 제품을 마진 추가하여 125링깃에 GST 6% 적용 후 132.5링깃에 판매

* 1.5링깃 세금 납부 = [7.5링깃(매출세액) - 6링깃(매입세액)]

- 소매업자 : 도매업자로부터 구매한 제품을 마진 추가하여 156링깃에 GST 6% 적용 후 165.36링깃에 판매

* 1.86링깃 세금 납부 = [9.36링깃(매출세액) - 7.5링깃(매입세액)]

- 최종적으로 소매업자가 소비자에게 판매한 제품 가격 165.36링깃 중 9.36링깃은 모두 소비자가 지불 하였으며 중간 과정에서 발생한 GST는 정부로부터 환급을 받음

<출처 : 말레이시아 세관 물품서비스세(GST) 공식 홈페이지>

영세율 적용품목(식품)

출처 : P.U. (A) 272 Goods and Services Tax (Zero-Rated Supply) Order 2014

No	품 목(식품만 발취)
1	소, 돼지, 양, 염소 등을 포함한 축산물
2	가축의 부산물 등을 포함한 신선 및 냉동 고기
3	살아있는 가금류와 오리
4	가금류와 오리의 부산물 및 신선/냉동 고기
5	닭과 오리의 알(신선 또는 소금에 절인 것)
6	활어, 신선, 냉장, 냉동 등 모든 종류의 생선(장식용 제외)
7	갑각류(게, 새우), 연체동물(굴, 홍합, 오징어, 달팽이), 해삼, 해파리 등의 수산생물
8	멸치를 포함한 말리고, 소금에 절인 생선(훈제 생선 제외)
9	토마토, 양파, 배추, 무, 오이, 콩류, 아스파라거스, 버섯, 호박, 감자 등의 야채
10	현지 생산 또는 수입산 신선 과일
11	타마린드, 건조 고추, 후추, 계피, 정향, 육두구, 생강 등의 허브 또는 향신료
12	코코넛(같은 것 포함)
13	찹쌀, 현미 등을 포함한 벼와 쌀
14	밀가루, 향유가루, 쌀가루, 사교야자가루
15	렌즈 콩
16	캐스터 설탕, 일반 및 미세 포함 설탕 과립
17	소금
18	팜, 코코넛, 땅콩 식용유
19	새우소스, 생선소스, 새우페이스트
20	커피, 차, 코코아 가루
21	쌀 버미첼리, 쌀 국수, 노란색 국수, 평면 쌀 국수
22	화이트/통밀 빵
23	아기 분유(0~36개월)

* 영세율 적용 서비스 및 면세 품목/서비스는 식품과 관련 없어 제외, 아래의 사이트 참조

- <http://gstmalaysiainfo.com/gst-list-zero-rated-exempted-relief/#Exempt-Goods>